**※ [주의]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,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#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(GIC) 핵심(요약)설명서

**[핵심(요약)설명서]**

이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)

**[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]**

| 구분 | 특징 | 수익률 형태 |
|---|---|---|
| 퇴직연금<br>이율보증형보험(GIC) |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, 부담금 납입 시점에 확정된 이율을 보증기간 동안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 | 약정금리형 |
| 시중은행 퇴직연금<br>정기예금 |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, 부담금 납입 시점에 확정된 이율을 약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 | 약정금리형 |

**[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]**

**□ 발생 가능한 불이익**

**- DB 제도에 편입하는 경우 :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**

**- DC/IRP 제도에 편입하는 경우 :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 인당 "1 억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**

- 만기 이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 되오니 가입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(재예치일)에 고시된 금리로 적용됩니다.

**□ 투자위험등급: 6 등급(매우낮은위험)**

- 당사는 상품의 위험등급을 1 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 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6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
이 상품은 투자 원금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

| 위험도 | 매우높은위험 | 높은위험 | 다소높은위험 | 보통위험 | 낮은위험 | 매우낮은위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위험등급 | 1 등급 | 2 등급 | 3 등급 | 4 등급 | 5 등급 | 6 등급 |
| 투자자성향 | 공격투자형 | 적극투자형 | | 위험중립형 | 안정추구형 | 안정형 |

**□ 유의사항**

- DB 제도: 만기일에 별도 해지 신청이 없을 시 원금에 만기지급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당초 약정 기간과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 (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) 됩니다.

- DC/IRP 제도: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한 가입자의 경우 상환 자금은 운용대기기간 만료 후 사전지정운용방법대로 운용이 개시되며, 대기기간 동안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.

**[민원, 상담 연락처]**

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퇴직연금 고객센터(1588-8844), 인터넷 홈페이지(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) 고객의 소리(이용안내 > 고객센터/FAQ > 고객의 소리)와 본사 민원담당부서 (02-3276-4334)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 외부 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#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(GIC) 상품설명서

| | |
|---|---|
| **상품명** | DB손해보험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(GIC) |
| **상품특징** |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, 부담금 납입 시점에 확정된 적용 이율을 보증기간 동안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 |
| **약정기간** | 1/2/3/5 년 |
| **가입금액** | 1원 이상 원단위 |
| **중도해지 및 인출** | 만기 전 중도해지 및 인출 가능 |
| **만기처리방법** | - DB 제도 : 만기일에 별도 해지 신청이 없을 시 원금에 만기지급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당초 약정 기간과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 (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)<br>- DC/IRP 제도 :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.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한 가입자의 경우 상환 자금은 운용 대기기간 만료 후 사전지정운용방법대로 운용이 개시되며, 대기기간 동안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 |
| **예금자보호여부** | - DB 제도<br>예금보험공사 비보호 **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**<br>- DC/IRP 제도<br>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**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1억원까지" 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** |
| **적용금리** | 본 상품은 상품 매수결제일에 '당사 홈페이지 > 연금 > 퇴직연금 > 퇴직연금 알아보기> 퇴직연금 사업자공시> 원리금보장상품 적용금리' 에 공시된 해당상품의 금리를 적용. 단, 만기 전 중도해지 및 인출 시에는 아래의 금리를 적용하여 약정일부터 중도해지 신청일까지 일할 계산한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지급. |

- 일반중도해지 시 :

| 이율보증기간 | 보유기간(중도해지 시) | 중도해지이율 |
|---|---|---|
| 1년 만기 | 1년 미만 | 약정금리 X 90% |
| 2년 만기 | 1년 미만 | 약정금리 X 80% |
| | 1년 이상 ~ 2년 미만 | 약정금리 X 90% |
| 3년 만기 | 1년 미만 | 약정금리 X 70% |
| | 1년 이상 ~ 2년 미만 | 약정금리 X 80% |
| | 2년 이상 ~ 3년 미만 | 약정금리 X 90% |
| 5년 만기 | 1년 미만 | 약정금리 X 50% |
| | 3년 이상 ~ 4년 미만 | 약정금리 X 60% |
| | 4년 이상 ~ 5년 미만 | 약정금리 X 70% |

- 특별중도해지 시 : 다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적용

•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

| | |
|---|---|
| | •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<br>•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br>• 가입자가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<br>•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<br>•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<br>•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을 매각하는 경우<br>•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을 매각하는 경우 |

※ 아래 내용은 고객님께서 교부 받으신 설명서에 추가되는 내용이오니 설명을 잘 들으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**▣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**

| | |
|---|---|
| **행사요건** |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**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**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|
| **대상 금융상품** |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 |
| **해지가능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** | 고객님께서 회사의 **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**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 |
| **해지절차** | **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(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)에 대하여 설명**해 드립니다. |

**▣ 자료열람요구권 안내**

| | |
|---|---|
| **행사요건** | 고객은 **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**으로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제 28 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.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|
| **자료열람** |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, 범위,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.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 년(일부 자료는 5 년)동안 보관합니다.<br>단,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,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. |

**▣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안내**

| | |
|---|---|
| **대상상품** | 1. 투자성상품: 고난도금융투자상품(단위형), 고난도투자일임계약, 고난도금전신탁계약, 비금전신탁<br>2. 대출성상품: 신용공여(신용거래, 주식담보대출) |
| **청약철회 행사방법** | **[투자성상품]**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(숙려기간 2 일 포함 시 9 일 이내)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고객님께서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계약/청약한 금액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|
| | **[대출성상품]**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청약 철회를 요청한 경우 고객은 대출원금과 이자,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지대(인지세의 50%)등을 반환해야 하며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반대매매 등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<br>청약철회는 내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|

**▣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**

민원신청 ⇨ 사실조사 ⇨ 민원 회신 ⇨ 민원인 수용 여부 결정 ⇨ 수용 시 민법상 화해 계약 성립 *

*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(민원)이 있는 경우,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| 접수처 | 접수방법 | 비고 |
|---|---|---|
| 전자민원접수 | 홈페이지(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) | 고객센터>고객의 소리 |
| 영업점민원창구 | 서면(민원신청서) | - |
| 본사 민원담당부서 | 이메일(minwon@koreainvestment.com), 우편, FAX(02-3276-4332) | 소비자지원부(02-3276-4334) |

**▣ 외부기관(금융감독원 등)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**

분쟁조정 신청 ⇨ 사실조사 ⇨ 조정안 제시 ⇨ 양 당사자 수용 여부 결정 ⇨ 수용 시 민법상 화해 계약 성립 *

*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

| 접수처 | 연락처 | 바로 가기(인터넷) |
|---|---|---|
| 금융투자협회 | 02-2003-9426 | (http://www.kofia.or.kr/wpge/m_77/sub040102.do) |
| 한국거래소 | 02-1577-2172 | (http://sims.krx.co.kr/p/Drct0201/) |
| 금융감독원 | 1332 | e-금융민원센터 링크(www.fcsc.kr)(PC) |

**▣ 판매직원 확인 사항**

| | |
|---|---|
| **판매직원 확인사항** |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<br>한국투자증권_____지점 (☎ _____) 직위: _____ 직원명 : _____ (서명) |